

# 검 토 보 고 서

의 변	안 호	제21호
--------	--------	------

2019. 3. 21 .

건	명	논산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(의원발의)	
제안 및 제출자	서원의원 외 4명	제안연월일	2019. 3. 06.
소 관 위 원 회	산업건설위원회	회부연월일	2019. 3. 06.

## 보 고 내 용

### □ 제안이유

-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전기자동차 보급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편의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### □ 주요내용

- 가. 전기자동차 보급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편의 (안 제1조)
- 나. 충전인프라 및 전기자동차의 정의(안 제2조)
- 다.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(안 제3조)
- 라.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계획 수립(안 제4조)
- 마. 전기자동차의 사업경비 지원, 운행에 대한 지원(안 제5조~제6조)
- 바. 업무용 전기자동차 우선구입 및 적극적 확대 홍보 등(안 제7조~제8조)
- 사. 환경부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준용 및 시행규칙(안 제9조~제10조)

### □ 검토의견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,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, 제10조, 제10조의2, 제11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됨.